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66 발의연월일: 2020. 12. 17.

발 의 자:정청래·김민철·김병주

신현영 · 오영환 · 이수진

이원택 • 임오경 • 임호선

주철현 · 최혜영 · 홍성국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46조제6호나목).

법률 제 호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6조제6호나목 중 "어분"을 "생선가루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(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)	제46조(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)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(생략)	6. (현행과 같음)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떡밥· <u>어분</u> 등 미끼를 사	나 <u>생선가루</u>
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	
낚시행위	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